

7

인도네시아

I. 통관/검역규정

1. 요약

-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에 ASEAN을 통해 중국, 한국, 일본 등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자유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기 침체로 중국 등 후발도상국들의 제품이 선진국시장에서 선회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에 덤핑판매를 시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반덤핑제소나 세이프가드 등 내수시장 방어를 위한 적극적인 수입규제정책 전개가 예상되고 있다.
- 또한 현실적으로는 반덤핑과 같은 공식적인 수입규제 조치보다는 무역수지 불균형 품목, 업종별 협회 불만품목, 자국산업 육성품목 및 소비재 품목에 대하여 세관 통관 강화, 조정관세 부가기준 강화, 자의적인 과표 산정 그리고 통관업체들에 대한 단속 및 등록강화 및 통관시 SNI인증 강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 통관/검역제도 일반

가. 수입업자 등록

- 인도네시아 법령에 의거 공식적으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수출허가는 필요치 아니하다. 다만 수입업 허가의 경우 크게 제조업 수입허가와 무역업 수입허가로 나뉘지며 제조업 수입허가의 경우 해당 공장에 필요한 자본재, 기계 설비 및 원부자재의 수입을 위해 필요하며, 일반 품목에 대한 수입을 위해서는 무역업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 인도네시아 수입통관은 보세업체 통관과 비보세업체 통관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비보세업체 통관은 수입 건별로 수입관세, 부가세, 법인세 (선납법인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화물 수입을 할 수 있는 통관방식으로 보세업체가 되면 수입절차가 간단해지기는 하지만 내수 판매를 원활히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내수 혹은 내수와 수출을 겸하

고자 하는 업체 및 완제품 수입을 하는 업체는 보세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업무를 진행한다.

나. 통관절차 및 구비서류

-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선적서류 원본 및 수입신고서 준비
 - 수입세 납부
 - 수입신고서를 EDI SYSTEM 이용하여 세관에 전송
 - 수입신고서 접수
 - 원본서류 제출
 - 세관의 검사 혹은 무검사 통관 결정
 - 검사 통관으로 결정난 경우 검사관과 함께 화물검사 실시, 검사보고서 작성후 담당관에게 제출
 - 통관 승인 및 화물 출고동의서 수령
 - 창고비 지불 후 출고증 수령하여 화물 출고
- 수입통관시 아래의 수입허가서중 1종과 사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 APIT(제조업체용 수입허가서) : BKPM(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에서 발행, 유효기간은 항구적이며 법인소유자가 외국인일 경우
 - APIU(무역업체용 수입허가서) : BKPM에서 발행, 유효기간은 항구적이며 법인소유자가 외국인일 경우
 - APIU(무역업체용 수입허가서) : 상공부에서 발행, 유효기간 5년 이후 재연장 가능, 법인소유자가 인도네시아인인 경우
 - NPWP(세무등록번호)
 - SRP(세관수입업자등록) : 법인을 세관에 등록후 발급, 없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수입통관 가능하나 추후 수입 불가능
 - 2009년 1월 1일부터 아동용 완구, 신발류, 가전제품, 의류, 식음료 등 5대 품목에 대해 등록된 수입업자(IT : Listed/Registered Importers)만 수입을 허용토록 규제한다. 이 경우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 가능하며 인가받은 선적전 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SGS 검사)가 필요하다.
- 수출입 관련 주요 규정으로는 THE DECREE OF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NO.230/MPP/KEP/7/1997이 있으며 주로 수입절차 및 지정수입업자에 의해 수입되는 품목들(우유, 치즈, 알코올음료, 맥주, 와인, 사이다, 페리주, 사케, 꿀물, 껌, 보드카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반

- 수입관세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관세국에서 발행하는 관세율표에 기준하여 작성하게 되는데, 한-아세안FTA 상품협정에 따라 전체품목의 90%에 달하는 일반품목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2009년 1월 1일부로 관세가 폐지되었으며, 나머지 민감 혹은 초민감품목이 3~20%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밖에 10% 부가세, 사치품세 및 2.5% 법인세(인도네시아의 경우 화물 수입시 법인세를 선납)를 모두 수입통관시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다. '2009년 한-아세안FTA 인도네시아 신규 관세율표'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 FTA 공식사이트 (www.fta.go.kr)
 - 인도네시아 재무부(www.tarif.depkeu.go.id/decreree/2008PMK236PMK001.pdf)
- 부가세 및 선납 법인 소득세의 현금 환급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매출 부가세를 기준으로 수입시 발생한 매출 부가세를 상쇄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한다. 부가세 환급 신청시 세무감사에 대한 우려로 부가세 환급신청이 아직까지는 사실상 기피되는 상황이다.
- 사치세(Sales Tax on Luxury Good)는 재무부장관이 규정하는 수입 및 국내생산 고급품에 대해 10, 20, 30, 40, 50, 60, 75%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세금은 제품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에만 과세하고, 소비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 우유, 치즈, 요구르트, 버터 : 10%
 - 포장, 패키징된 과일 및 야채주스 : 10%
 - 포장, 패키징된 논알코올 음료 : 10%
 - 일정한 알코올음료 : 40%
 - 40%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한 알코올음료 : 75%

라. 원산지 규정

- 원산지증명서는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후 관세 환급 신청시에나 요구되며 한-아세안 FTA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섹서서류 속에 원산지증명서도 한-아세안 FTA용으로 받아서 포함시키고 적용관세율 항목에 FTA 관세임을 밝혀야 한다.

마. 잔류농약 성분 기준

-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은 현지생산이거나 수입산이라 할지라도 규정된 항목의 허용치를 초과할 시에는 수입 및 유통될 수 없다.
- 1996년 제정된 식품법과 함께 농림부 및 보건부에서 제정된 시행령 (Ref : Keputusan Bersama Menteri Kesehatan dan Menteri Pertanian Nomor : 881/Menkes/SKB/VIII/1996, 711/Kpts/TP.270/8/96)에 의해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소비 할 식품에 허용되는 218개 최대농약잔류 기준이 통제되고 있으며 미생물 (No. 03726/B/SK/VII/89) 및 중금속에 관한 규정(No. 03725/B/SK VII/89)들이 보건부 산하 식약청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 2009년 10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저가, 저품질, 더 나아가 건강상 위험까지도 초래하는 과일의 수입에 FAO가 규정하는 건강 위해 여부, 생물 및 화학적 잔류농약 기준 등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대인니 과일수출업체는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 통관시 주의사항

- 세관에서 서류 심사시 가격이 너무 낮다고 자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관세 및 벌금을 추징하게 된다. 이때 세관에서 제시하는 가격 기준이 제품의 시중 판매가격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 유통단계가 많은 소비재 분야에서 과도한 조정관세를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수입자가 추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승소 확률은 상당히 낮은 실정이며, 인니 세관규정에 따르면 수입화물에 대한 조정관세

및 벌금 추징시 1달 이내에 추징관세 및 벌금 납부를 조건으로 화물은 선출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추징고지서 발급 시점에 추징금액을 납부하고 세관에 신고해야만 출고동의서를 발급함으로 세관 내규가 서류 상충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 세법 위반시 제재조치

- 세관당국은 수입통관후 2년간 수입품의 관세품목 분류와 평가액을 재결정(조정, 수정, 재평가)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세관이 수입관세의 과세여부를 결정하면 최소 500%까지의 벌금의 부과된다.

3. 품목별 통관/검역제도

가. 검역제도 및 검역법 일반

-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제도는 수입금지국, 수입금지품목, 수입제한품목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데 수입금지 국가는 이스라엘이며 현재 수입 금지되고 있는 품목중 농산물의 경우는 없다.
- 대부분의 수입농산물이 도착하는 판중 프리옥 항구에 농림부 산하의 검역소가 있으며 컨테이너가 도착하기 전에 검역소에 통관서류 및 검역증 사본을 제출 후 검역을 신청한다. 검역소는 서류검토 후에 수입업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이 기술된 통지서를 주며 컨테이너가 항구에 도착하면 세관직원과 검역직원이 컨테이너를 검사후 샘플을 검역소로 가져가서 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한국 검역당국에서 보내온 서류만으로 검사를 대신하며 농림부에서 발행한 검사인증서를 주는 것으로 모든 검역절차는 끝난다. 소요금액은 약 30달러 정도이고 수속기간은 대부분 1일 정도가 소요된다.
- 검역법으로는 1992년에 제정된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16 OF 1992 CONCERNING ANIMAL, FISH AND PLANT QUARANTINE가 있으며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동·식물의 질병과

유해병균에 대한 검역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요구한다.

- 수출국가의 검역증명서
- 지정된 장소로만 통관이 가능
- 검역활동을 위해 통관지역 관할 검역사무소에 신고 및 서류제출

○ 검역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 수입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 수입식물의 수량과 종류
- 방사선 처리 및 유전자변형 여부
- 수출품의 국가 및 지방명
- 수확 시점
- 수하인의 성명 및 이름
- 하역장소 및 수입목적

나. 위반시 제재조치

- 식품검역법에서 기술한 각종 조항들을 고의적으로 위반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5천만 루피아(약 USD 15,000)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 품목별 수입가능여부

품목명	가능여부	수입요건
밀가루	제한적 가능	·SGI인증
옥수수	제한적 가능	·별도의 수입허가(NPIK : Special Importer Identification Code Numbers)
쌀·벼	제한적 가능	
대두류	제한적 가능	
사탕수수	제한적 가능	
과일	가능	·보건증명서 ·과실판리와 접촉이 없었다는 증명서
감자	가능	·보건증명서 ·흑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명서
마늘	가능	·수입허가
소금	가능	
과일쥬스	가능	
커피 및 차	가능	
비알콜음료	가능	
비료	제한적 가능	·SGI인증 ·관계기관의 실제 사용검사
인공감미료	제한적 가능	·보건부의 특별 수입허가

라. 품목별 수입요건

- 밀가루 : SGI인증 강제품목
- 옥수수, 쌀·벼, 대두류, 사탕수수 : 별도의 수입허가(NPIK) 필요
- 신선과일 및 과채류
 - 원산지 국가와 중간 경유지의 검역증
 - 수입지역 명시
 - 해당 수입지역 검역소에 검역신고
 - 발송지 식물검역에 대한 추가신고서
 - 냉장처리 이행조건에 대한 발송지 식물검역의 이행 조치사항을 반드시 신고서에 기재

- 나무 포장 된 농산물과 비 농산물 : 2009년 9월부터 검역 의무화
- 과일 : 보건증명서 및 과실판리와 접촉이 없었다는 증명서 첨부(신선한 과일은 수입 전에 37°F에서 17일 이내 기간 동안 저장된 것이어야 함)
- 감자 : 보건증명서 및 흑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첨부
- 특정동물 : 인도네시아 수의부의 검사증명서 첨부
- 가축 : 수출국의 가축보건 관련 규칙을 참조하여 해당규칙을 제정하고 인도네시아 도착 후 10~14일 이내 검역실시(소는 도살용과 번식용으로 나누어서 수입허가)
- 마늘, 완두콩, 식물의 구근, 옥수수, 세이고우, 야자줄기 및 타피오카 뿌리에서 추출한 전분가루, 기름추출용씨앗, 식품성 기름, 지방산, 타피오카, 비료 및 사료용의 기름찌꺼기, 가공되지 않는 담배, 소금, 생고무 및 가공고무, 조리된 과일 및 야채, 과일쥬스, 커피 및 차, 조리된 고기 및 생선, 비알콜 음료 : 농업부나 무역부의 수입허가 필요
- 비료, 살충제 및 살균제 : 농업부나 관계기간의 실제 사용검사를 거쳐야 함(검사시간은 18개월 가량), 비료의 경우 SGI인증 강제품목
- 인공감미료 : 보건부의 특별 수입허가 필요

마. 통관 거부사례

-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특별한 검역규정은 없으며 현재까지 한국산 농산물이 검역상의 하자로 수입이 거부된 적은 없다. 다만 검역당국에서는 중국 등의 일부 후발 수출국 농산물에 대해서만 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산 과일 등의 일반농산물의 경우 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로 통관이 가능하며 식물은 모든 검역서류를 완벽하게 준비만 한다면 인도네시아에서 검역을 받을 필요가 없다.

<참고 1>

인허가/등록**1. 인허가/등록 주관 기관: BPOM**

BPOM(The National Agency for Drug and Food)은 한국의 식약청이나 미국의 FDA와 유사한 기관으로 각종 약품, 기능성식품, 화장품 등의 인허가/등록 기관으로, 제품의 품질 및 유통을 규제하고 있음.

- 주 소: Jl. Percetakan Negara No.23, B Building, 2nd Floor, Jakarta
- 전 화: 62-21-426-3333, 425-9945
- 팩 스: 62-21-4288-9117
- E-mail: informasi@pom.go.id
- <Agency for Drug, Food and Cosmetic of Indonesian Islamic Council : LPPOM MUI>

인도네시아 제약, 식품, 미용관련 이슬람 기관으로 동물성 지방 등이 함유된 해당 제품의 경우에 대해 Certificate of Halal 을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슬람이 90%에 달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기관의 인증이 제품의 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이 기관의 해당 제품 인증이 없으면 대중들이 소비에 소극적이 될 수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관임.)

Auditor 2명 비용 (한 사람당 하루 임금 US\$200)과 등록비 20 만 - 200만 루피아 (USD 22- 220) 이 든다고 함.

- 주 소: Masjid Istiqlal, Jl. Taman Wijayakusuma Kamar 25, Jakarta
- 전 화: 62-21-345-0928
- 팩 스: 62-21-350-7486
- E-mail: halalmui@indosat.net.id ; halalmui@indo.net.id
- 홈페이지: www.halalmui.or.id
- 담당자: Mr. Endin

2. 인허가제 혹은 등록제 종류

- 외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약품이나 화장품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입 제품을 현지법인 혹은 에이전트를 통해 BPOM에 등록해야 현지에서 유통이 공식적으로 허용됨.
- BPOM 등록 비용은 250 만 루피아 (USD 270) 이고 원칙적으로 제반 서류를 모두 갖춰 제출한 시점에서 3개월 내에 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 -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함.
- BPOM의 정식 등록절차를 거치면 ‘보건복지부 제품 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MOH)’를 발급받게 된다고 함.
또한 할랄 인증기관인 LPPOM MUI의 인증절차를 거치면 Halal Certificate (젤라틴, 쇠기름 등의 수지 (tallow), 동물성 지방이 함유 되어 있을 경우 해당)을 받을 수 있음.

3. 인허가/등록 절차

가. MOH 등록 필요 서류

- A, B, C, D 등록 서류 양식
-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공증된 Letter of Distributorship Agreement
- 제조업체로부터의 Authorization letter
-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공증된 Certificate of Free Sales.
- Certificate of Analysis.
- 3 병의 기능 식품 샘플 Sample of food supplements (3 bottles)
- 라벨 (label)

나. MOH 관련 유의사항

- 제품 등록이 되면 보건복지부(MOH)로부터 등록 번호를 받게 되는데, 등록 번호는 제품에 명기 되어야 하며 라벨은 영어 혹은 인도네시아

말로 표시 되어야 함.

- 라벨에는 식품의 이름, 브랜드, 재료, 무게, 식품 제조원의 주소 및 수입업체의 이름 및 등록 번호가 표시 되어야 함.
- 우유 등 특별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기한 및 보관 방법, 사용 방법 등이 라벨에 표시 되어야 함.
- 유제품, 돼지고기 관련 재료, 인공 감미료 등이 포함된 제품은 표시가 되어야 함.
- 유제품, 유아식, 캔 제품, 음료, 소시지 등 해당 제품은 유통기간이 반드시 표시가 되어야 함.
- Antioxidatn, artificial sweetener, flour treatment, agent emulsifier, stabilizer, thickener perservative, firming agent, enhance 등의 식품 첨가물 (Food Additives) 의 경우 Certificate of Analysis 가 있어야 함.

<참고 2>

주요 관련기관**1. 관세청 조직**

- 인도네시아는 14,500여명의 세관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홍콩, 일본, 벨기에 등 4개 국가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있다. 관세청장 산하에 아래와 같은 8개의 국이 있으며, 13개의 본부세관과 112개의 지방세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예산기획국(DIRECTORATE OF REVENUE PLANNING)
 - 관세기법담당국(DIRECTORATE CUSTOMS TECHNIQUE)
 - 통관국(DIRECTORATE CUSTOMS FACILITATION)
 - 소비세담당국(DIRECTORATE OF EXCISE)
 - 조사방지국(DIRECTORATE OF PREVENTION OF INVESTIGATION)
 - 심사평가국(DIRECTORATE OF VERIFICATION AND AUDIT)
 - 국제업무국(DIRECTORATE OF INTERNATIONAL AFFAIR)
 - 관세정보국 (DIRECTORATE OF CUSTOMS AND EXCISE INFORMATION)
- 13개의 지역 본부세관은 다음과 같다.
 - Custom Regional Office I MEDAN
 - Custom Regional Office II TJ.BALAI KARIMUN
 - Custom Regional Office III PALEMBANG
 - Custom Regional Office IV JAKARTA
 - Custom Regional Office V BANDUNG
 - Custom Regional Office VI SEMARANG
 - Custom Regional Office VII SURABAYA
 - Custom Regional Office VIII DENPASAR
 - Custom Regional Office IX PONTIANAK
 - Custom Regional Office X BALIKPAPAN
 - Custom Regional Office XI MAKASAR
 - Custom Regional Office XII AMBON

- Custom Regional Office X III ACEH

2 검역기관

- 검역기관으로는 2001년 농림부 산하에 설립된 AAQ(The Agency for Agriculture Quarantine)가 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200여개가 넘는 출입소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1587명의 인원이 68종 이상의 동물과 수산물 및 식물 검역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3. 식품관련 주요 정부기관

- Ministry of Finance
Director General for Food Crops Customs and Duties
Jl. Jend. A. Yani/ By Pass Jakarta
Tel : 62-21-489-7511 Fax : 62-21-489-0308
- Ministry of Agriculture
Director General for Food Crops
Jl. AUP Pasar Minggu, Kotak pos 97 Jakarta 12520
Tel : 62-21-780-6810 Fax : 62-21-780-6309
Website : www.deptan.go.id
- Director General for Livestock Services
Building C, 6th Floor
Jl. Harsono RM NO.3 Ragunan, Pasar Minggu, Jakarta 12550
Tel : 62-21-781-5580 Fax : 62-21-781-5581
- Director General for Agriculture Processing and Msarketing
Building D, 2nd Floor
Jl. Harsono R.M No.3 Ragunan, Jakarta 12550
Tel : 62-21-781-6183 Fax : 62-21-781-6184

- Agency for Agricultural Quarantine
Building E, 5th Floor
Jl. Harsono R.M No.3 Ragunan, Jakarta 12550
Tel : 62-21-781-6483 Fax : 62-21-781-6483
Email : caqsps@indo.net.id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Director General for Foreign Trade
Building I, 4th Floor
Jl. M.I Ridwan Rais No. 5
Tel : 62-21-385-8204 Fax : 62-21-385-8191
Email : djdaglu@dprin.go.id

- Directorate of Import
Building II, 8th Floor
Jl. M.I Ridwan Rais No. 5
Tel : 62-21-385-8171 Fax : 62-21-385-8194
Email : diri-daglu@dprin.go.id

- Directorate General for Chemical Industry, Agros & Forest Products
Jl. Gatot Subroto No. 52~53 18th Floor, Jakarta 12950
Tel : 62-21-525-2713 Fax : 62-21-525-2450
Email : djikahh@dprin.go.id

- National Agency of Drugs & Food Control - BPOM
Deputy III for Dangerous Materials and Food Safety Control
Jl. Percetakan Negara No. 23, Jakarta 10560
Tel : 62-21-425-3857 Fax : 62-21-545-3857
Website : www.pom.go.id

- National Logistics Board - BULOG
Jl. Gatot Subroto No. 49, Jakarta 12950

Tel : 62-21-525-2209 Fax : 62-21-520-4334

-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 BSN
Manggala Wanabakti Building Block IV, 4th Floor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Tel : 62-21-574-7043 E)104 Fax : 62-21-574-7045
Website : www.bsn.or.id
- The Indonesian Council Of Ulama - MUI
Masjid Istiqlal Taman Wijaya Kusuma
Jl. Masjid Istiqlal, Jakarta 10710
Tel : 62-21-384-1662 Fax : 62-21-384-7189
- The Indonesian Food & Beverage Association - GAPMMI
Duta Mas Fatmawati Block D-1 No. 30
Jl. RS Fatmawati Raya, Jakarta 12150
Tel : 62-21-723-0391 Fax : 62-21-723-0090
Email : gapmmi@indosat.net.id
- Association of Indonesia Frech Fruit and Vegetable Importers (ASIBSINDO)
Komplek Material Mangga Dua Building
Jl. Mangga Dua Raya Block F4/25, Jakarta 10730
Tel : 62-21-3906-973 Fax : 62-21-3906-5674
- Indonesian Consumer Organization - YLKI
Jl. Pancoran Barat VII No. 1 Duren Tiga, Pasar Minggu, Jakarta 12760
Tel : 62-21-798-1858 Fax : 62-21-798-1038
Website : www.ylki.org
- Association of Flourmills - APTINDO
Daniprisma Building, 3rd Floor
Jl. Sultan Hasanuddin No. 47~48, Jakarta 12160

Tel : 62-21-7279-7843 Fax : 62-21-720-6008

Email : aptindo@rad.net.id

○ Association of Meat Importers - ASPIDI

Jl. Ciputat Raya No. 351, Kebayoran Lama, Jakarta 12240

Tel : 62-21-7279-3417 Fax : 62-21-7279-3419

Email : asp-1984@cbn.net.id

○ Association for Food and Beverage Importers - AIMMI

PT Columbi Food

Jl. Kebon Bawang V No. 44

Yos Sudarso, Tanjung Priok, Jakarta 14320

Tel : 62-21-4391-1526 Fax : 62-21-435-3384

Email : colfood@cbn.net.id

○ Indonesian Cold Chain Association - ARPI

Graha Iskandarsyah, 8th Floor

Jl. Iskandarsyah Raya / 66C, Kebayoran, Jakarta 12160

Tel : 62-21-7278-3707 Fax : 62-21-7278-3708

Email : arpi@cbn.net.id